보 건 복 지 부

시 정 요 구

제　　목 **장애수당 지급업무 소홀**

기 관 명 중구, 서구, 동구, 영도구, 동래구, 북구, 해운대구, 사하구, 연제구, 수영구, 사상구, 기장군

내　　용

「장애인복지법」 제49조 및 보건복지부 지침 「장애인연금 사업안내」의 규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장애 정도와 경제적 수준을 고려하여 장애로 인한 추가적 비용을 보전하게 하도록 장애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,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를 받는 등록 장애인[118]에게는 장애수당[119]을 반드시 지급하게 되어 있다.

그런데 중구 등 12개 구·군에서는 아래 【표】와 같이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를 받는 43명의 장애인에게 2014년부터 2016년까지 1~28개월간 7,820,000원의 장애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.

118) 만18세 이상의 등록 장애인 중 3~6급의 장애등급을 가진 경증장애인(3급의 중복장애인은 중증장애인이므로 제외)
119) 장애수당(기초): 2013~2014(3만원/월), 2015~2016(4만원/월) / 장애수당(시설): 2013~2016(2만원/월)

【표】 장애수당 미지급 현황(2016년 12월 기준)

(단위: 명, 원)

구/군	합계		장애수당(기초)		장애수당(시설)		장애수당(기초/시설)	
	인원	금액	인원	금액	인원	금액	인원	금액
계	43	7,820,000	25	5,480,000	17	2,160,000	1	180,000
중구	1	120,000	-	-	1	120,000	-	-
서구	5	980,000	2	320,000	3	660,000	-	-
동구	3	1,440,000	2	880,000	1	560,000	-	-
영도구	3	360,000	3	360,000	-	-	-	-
동래구	5	600,000	-	-	5	600,000	-	-
북구	1	180,000	-	-	-	-	1	180,000
해운대구	9	1,720,000	8	1,640,000	1	80,000	-	-
사하구	8	920,000	3	800,000	5	120,000	-	-
연제구	1	20,000	-	-	1	20,000	-	-
수영구	2	120,000	2	120,000	-	-	-	-
사상구	3	600,000	3	600,000	-	-	-	-
기장군	2	760,000	2	760,000	-	-	-	-

조치할 사항

중구청장은

[시정]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장애인에게 지급하지 않은 장애수당 120,000원을 추가 지급하시고, 「국가재정법」 및 「지방재정법」 금전채권·채무의 소멸 시효에 따른 미지급분 유무에 대해서는 자체 조사하여 추가지급 등 필요한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.

서구청장은

[시정]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장애인에게 지급하지 않은 장애수당 980,000원을 추가 지급하시고, 「국가재정법」 및 「지방재정법」 금전채권·채무의 소멸 시효에 따른 미지급분 유무에 대해서는 자체 조사하여 추가지급 등 필요한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.

동구청장은

[시정]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장애인에게 지급하지 않은 장애수당 1,440,000원을 추가 지급하시고, 「국가재정법」 및 「지방재정법」 금전채권·채무의 소멸 시효에 따른 미지급분 유무에 대해서는 자체 조사하여 추가지급 등 필요한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.

영도구청장은

[시정]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장애인에게 지급하지 않은 장애수당 360,000원을 추가 지급하시고, 「국가재정법」 및 「지방재정법」 금전채권·채무의 소멸 시효에 따른 미지급분 유무에 대해서는 자체 조사하여 추가지급 등 필요한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.

동래구청장은

[시정]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장애인에게 지급하지 않은 장애수당 600,000원을 추가 지급하시고, 「국가재정법」 및 「지방재정법」 금전채권·채무의 소멸 시효에 따른 미지급분 유무에 대해서는 자체 조사하여 추가지급 등 필요한 조치를

하시기 바랍니다.

북구청장은

[시정]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장애인에게 지급하지 않은 장애수당 180,000원을 추가 지급하시고, 「국가재정법」 및 「지방재정법」 금전채권·채무의 소멸 시효에 따른 미지급분 유무에 대해서는 자체 조사하여 추가지급 등 필요한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.

해운대구청장은

[시정]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장애인에게 지급하지 않은 장애수당 1,720,000원을 추가 지급하시고, 「국가재정법」 및 「지방재정법」 금전채권·채무의 소멸 시효에 따른 미지급분 유무에 대해서는 자체 조사하여 추가지급 등 필요한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.

사하구청장은

[시정]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장애인에게 지급하지 않은 장애수당 920,000원을 추가 지급하시고, 「국가재정법」 및 「지방재정법」 금전채권·채무의 소멸 시효에 따른 미지급분 유무에 대해서는 자체 조사하여 추가지급 등 필요한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.

연제구청장은

[시정]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장애인에게 지급하지 않은 장애수당 20,000원을 추가 지급하시고, 「국가재정법」 및 「지방재정법」 금전채권·채무의 소멸 시

효에 따른 미지급분 유무에 대해서는 자체 조사하여 추가지급 등 필요한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.

수영구청장은

[시정]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장애인에게 지급하지 않은 장애수당 120,000원을 추가 지급하시고, 「국가재정법」 및 「지방재정법」 금전채권·채무의 소멸 시효에 따른 미지급분 유무에 대해서는 자체 조사하여 추가지급 등 필요한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.

사상구청장은

[시정]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장애인에게 지급하지 않은 장애수당 600,000원을 추가 지급하시고, 「국가재정법」 및 「지방재정법」 금전채권·채무의 소멸 시효에 따른 미지급분 유무에 대해서는 자체 조사하여 추가지급 등 필요한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.

기장군수는

[시정]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장애인에게 지급하지 않은 장애수당 760,000원을 추가 지급하시고, 「국가재정법」 및 「지방재정법」 금전채권·채무의 소멸 시효에 따른 미지급분 유무에 대해서는 자체 조사하여 추가지급 등 필요한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.